

[별 표2]

공 · 사상 분류 기준표(제70조관련)

공사상 구 분	기 준 번 호	내 용
순직 · 공상	1-1	화재 등 재난재해의 예방과 진압 및 수습 업무를 지원 수행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1-2	교육 또는 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1-3	소방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 또는 상이자 (출장 또는 공용기간중의 공무수행중 영의취침 포함)
	1-4	소방기관에서 취침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출장 또는 공용기간중의 공무수행중 영의취침 포함)
	1-5	공무수행의 착수전, 휴식기간중, 종료후의 공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업무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소방기관 근무중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1-6	출·퇴근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1-7	출장 또는 공용기간중에 공무수행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1-8	전속·과건 등의 명령을 받고 임지로 부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1-9	휴가, 외박, 외출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1-10	소속상관 지휘하의 행사,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공사상 구 분	기 준 변 호	내 용
순직 · 공상	1-11	휴가, 외박, 외출기간중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의 수행 또는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1-12	당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따른 사망 또는 상이자
	1-13	근무지내에서 공무수행중 급사자 또는 급성질환으로 응급치료가 불가하여 그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자
	1-14	기타 공무수행중 발생한 사고 및 재해로 사망 또는 상이자
일반 사망 · 비공상	2-1	장난, 싸움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2	무단이탈 및 법령위반 등으로 구속조사중 질병 및 상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3	휴가, 외박, 외출기간중 공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자
	2-4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2-5	영외에서 공무와 관련없이 개인용무중 사고 또는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자
변 사, 자 살, 자 해, 비공상	3-1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자
	3-2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자해행위로 인한 결과로 사망 또는 상이자